#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2월 18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전국 수수료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련 종목 세분화 : 4종 → 7종
-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금액 하향 조정
  - 유원시설업 허가 등 : 60,000원 ~ 15,000원 ⇒ 60,000원 ~ 10,000원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변경 : 10,000원 ⇒ 5,000원
  - 석유판매업 등록 등 : 50,000원 ~ 15,000원 ⇒ 20,000원 ~ 10,0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1)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영등포구 수수료 중 전국 표준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수료 종목 및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리 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수수료 외 7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전국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며, 인하 조정대상 종목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12건 33만원이 소액 징수되어 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번	종 목	건수	금 액(원)
계		12	330,000
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3	180,000
2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2	60,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6	60,000
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0	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	30,000
6	석유판매업(일반,항공,특수판매업)등록	0	0
7	석유대채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0	0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0	0

○ 또한, 종전에 유원시설업과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으로 세분화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를 추가하는 등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sup>1)</sup> 제139조(사용료의 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장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장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장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23 호 제출연월일: 2016.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전국 수수료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련 종목 세분화: 4종→7종

나.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금액 하향 조정

- 유원시설업 허가 등: 60,000원~15,000원 ⇒ 60,000원~10,000원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변경: 10,000원 ⇒ 5,000원
- 석유판매업 등록 등: 50,000원~15,000원 ⇒ 20,000원~10,000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시(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실시(원안동의)

# 라. 기 타

입법예고('15.12.24.~'16.1.13.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같은 호 마목(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같은 호 자목(석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현행과 같음)
-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5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2) 일반유원시설업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현행가 같음)	(현행과 같음)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3) ~ 26) (현행과 같음)	(현행가 같음)	(현행과 같음)	
바. ~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1건	10,000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혀 했 개 젔 아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5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단위:원) (단위:원) 목 수수료액 비고 모 단위 수수료액 비고 다의 종 종 가. ~ 다. (생략) (생략)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 종합유원시설업 1건 60.000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60,000 신청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30,000 신청(변경신고) 2) 일반유원시설업 2) 유원시설업 1건 30,000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7 50,000 나)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0 신청(변경신고) 3) 기타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1건 10,000 5)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생략) |5) ~ 13) (생략) (생략)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1) (생략) (생략) (생략)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5,000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 1건 3) ~ 26)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3) ~ 26) (생략) (생략) (생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바. ~ 아. (생략) (생략) (생략) 자.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 자,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1건 5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3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 1건 10,000 15,000 1건 특수판매소)일반판매소)신고 수판매소)신고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50,000 2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1건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10,000 1건 30,000

차.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차. (생략)

3. ~ 4.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